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3가단5078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

담당변호사 정주혜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

담당변호사 류재율, 손혜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

변론 종결2024. 4. 23.

판결 선고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1. 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,996,0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00,996,0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및 인정근거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감정인 E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배우자인 F으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말을 듣고 매수하게 되었을 뿐 채무자 D의 자산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,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거래가를 110,000,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거래는 78,000,000원으로 이루어져 시세보다 10,000,000원 ~ 20,000,000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.

나. 판단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,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,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).

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

부족하고, 오히려 갑 제11,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19. 11. 18.경 채무자 D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해시 G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절친한 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채무자 D의 재산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, 피고는 F의 배우자로 역시 채무자 D의 재산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또한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209,314,000원에 달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10,000,000원 ~ 20,000,000원 정도 감액된 금액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최윤중

별지